

## 제2장 초상권 침해 사례





## 제2장 초상권 침해 사례

### 사례 18

신청인이 아기를 업고 워킹맘 엑스포에 참석한 것을 언론사가 동의 없이 촬영·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754 손해청구
신 청 인	임○○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세계닷컴 (세계닷컴)
중 재 부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2015. 01. 23.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손해배상 - 동의)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시간선택제 워킹맘들이 고과 불이익 등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워킹맘 엑스포에서 아이를 업고 구경하고 있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해 게재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진 촬영 및 보도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조정대상기사가 이후 포털 사이트(네이버)에 메인 기사로 뜨면서 약 2,000개가 넘는 욕설, 악성 댓글이 달리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일부 피해를 인정해 상징적인 금액으로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중재부가 손해배상금 1,500,000원 및 피신청인과 제휴 관계에 있는 포털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하단의 네티즌 의견(댓글)이 삭제되거나 차단되어 검색되지 않도록 해당 포털사에 요청하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양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 조정대상보도

- 세계닷컴 - 『동료 눈치… 고과 불이익… 시간선택제 워킹맘들 눈물』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8일자 사회면)

■ 내 용

세계일보

동료 눈치...고과 불이익...시간선택제  
워킹맘들 눈물

기사입력 2015.01.08 오후 7:18

최종수정 2015.01.08 오후 9:19

2,124

가- 가+

걸도는 육아병행 지원책... "기업문화 개선 필요"



'워킹맘 엑스포'에 아이를 업고 온 여성이 채용부스에서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slay\*\*\*\*

돼지처럼 줄줄이 소세지마냥 애만 퍼지르고 부장시켜달라할  
기세네..

2015.01.09 오전 12:49 신고

답글 2

2

13

azum\*\*\*\*

조현아 조현민 정도가 아니면 보통 서민 여자들은 다 저렇게 비  
참하고 힘들게 사는거다 ㅠㅠ

2015.01.09 오전 12:49 신고

답글 0

10

1

winm\*\*\*\*

남이 나를 배려해주면 감사한거지, 당연한게 아니지. 지들이 좋  
아서 애새끼는 싸질러놓고 힘들다고 남보고 책임지라는게 말  
이 되냐? 배려가 의무가 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나 통하는 말  
이지, 당신들 임신과 출산에 눈꼽만치도 참여하지 않은 3자가  
져야할 의무는 아니지

2015.01.09 오전 12:49 신고

clou\*\*\*\*

워킹하지마세요. 세상은 잘돌아가구요! 자기삶을위한남들의  
희생이 사회적 배려라 생각지마세요 그러면서 남편 늦는다가  
정에 소홀하다 할말은 다하시자나요 내말이 틀린가요?

2015.01.08 오후 11:14 신고

답글 0

7

11

 g1135993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저렇게 한심한꼬라지로 살까?

2015.01.08 오후 11:14 신고 리트윗

답글 1

3

27

some\*\*\*\*

애아빠는 다 뒤졌어?? 다 흠어미야?? 이러니 아빠들이 부모취급도 못받는거야. 싸질러놓고 나몰라라 일만해??

2015.01.09 오전 12:12 신고

답글 0

6

1

bamb\*\*\*\*

전세값이라도 안정시켜주면 애도 낳고 열심히 살아보겠어...

2015.01.09 오전 12:12 신고

답글 0

4

0

john\*\*\*\*

한나라의 우두머리들이 국가부채를 계속 늘리니 살기가 더 힘들구나. 다들 쥐똥 닭똥 치우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5.01.09 오전 12:12 신고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1,5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2015년 1월 8일자 「동료 눈치... 고과 불이익... 시간선택제 워킹맘들 눈물」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초상을 촬영한 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도하여 신청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3. 피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제휴 관계에 있는 네이버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2015년 1월 8일자 「동료 눈치... 고과 불이익... 시간선택제 워킹맘들 눈물」 제하의 기사, 하단의 네티즌 의견(댓글)이 삭제되거나 차단되어 검색되지 않도록 해당 포털사에 요청한다.
4.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세계닷컴의 DB에서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에 게재된 신청인의 사진을 영구히 삭제하여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하며 향후 재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02. 25.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피신청인 동의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500,000원 지급

## 사례 19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신청인들이 남자의 학벌과 경제력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처럼 편집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2803·2804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동○○ 외 1인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매일방송 (MBN)
중 재 부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2015. 04. 15.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정정보도)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20대 여성들의 남성 기준”에 관한 주제 영상을 방송하면서, 일반인 출연자인 신청인들이 남성의 조건으로 ‘외제차’, ‘연봉 5천만원’ 등을 언급하는 장면이 신청인들의 실제 의견인 것처럼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해당 발언은 제작진의 요구에 따른 설정된 상황임에도 충분한 설명 없이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방송되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5,000,000원을 청구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항의를 받은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한 점, 두 차례에 걸쳐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점, 또한 방송 이후 신청인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게시물 작성자들에게 삭제를 요청했던 점 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대신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수준에서 협의할 것을 권유했다. 또한 신청인이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물 및 댓글이 게시된 URL을 알려올 경우 피신청인이 즉각 게시자에게 삭제 요청할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MBN - 『언니들의 선택』 프로그램 (2015년 5월 2일자)

■ 내 영



- ▶ 신청인 : 하루에 놀면, 정말 제대로 놀면 20만원 정도 들어, 나는 남자 친구랑 있으면 아끼는 편은 아니야. ‘먹고 싶어’, ‘먹고 싶어’ 그러면 서로 막쓰니까는 돈이 장난이 아니니까는, 기념일이나 뭐 많으니까. 오히려 나는 괜찮은데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남자친구는 나보다 더 좋은 직업이었으면 좋겠고, 연봉도 그렇고.
- ▶ 다른 친구 1인 : 남자 친구가 얼마 벌었으면 좋겠다고? (웃음)
- ▶ 신청인 : 나 하나도 몰라 그런 거, 남자친구가 얼마를 버는지 하나도 모르고, 나도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이제 들어서기 시작할 즈음이어서. 근데 남자 친구랑 그런 얘기는 했었었어. ‘한 달에 얼마를 벌었으면 좋겠냐고’
- ▶ 다른 친구 1인 : 언니한테 물어봤어
- ▶ 신청인 : 어, 결혼을 한다, 가정을 하고 한 달에 얼마쯤 벌면 괜찮을 것 같아 이랬는데, 근데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진짜 ‘한 달에 400~500’ 이랬어.(웃음)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 1. 보도문

가. 제목 : ‘20대 여성들이 보는 남자의 기준’ 자료화면 관련 알림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2월 21일 1회 방송에서 “20대 여성들이 보는 남자의 기준”과 관련하여 세 명의 여성이 “연봉 5천만원 이상”, “외제차” 등을 언급하는 주제VCR을 방송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작진의 연출에 따라 재연된 화면으로,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발언은 출연자들의 가치관과 일절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방송 관련 영상(사진)을 보관하고 계신 시청자들께서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언니들의 선택> 2015년 5월 2일자 방송에서 프로그램 시작 후 15분 이내에 시청자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스크롤 자막으로 표시하되, 통상적인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보도한다. 또한 해당 일자 프로그램 중영 5분 안에 제1항의 보도문을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통상적인 자막 활자 크기와 동일한 활자 크기로 보도한다.

3. 피신청인은 2015년 7월 31일까지 신청인들이 삭제를 원하는 URL을 제시할 경우 즉각 게시자들에게 삭제를 요청한다. 이후 신청인들 관련 URL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삭제에 최대한 협조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2항을 이행한 경우,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제작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성립사항 이행결과

- MBN - 언니들의 선택 프로그램 『‘20대 여성들이 보는 남자의 기준’ 자료화면 관련 알림』 제하의 보도 (2015년 5월 2일자)

## ■ 내 용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례 20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차량 사고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3006 손해청구	
신	청	인 박○○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SBS-TV)
중	재	부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2015. 06. 08.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손해배상)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시청자들이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소개하는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이 주차한 차량이 저절로 도랑으로 빠지는 장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영상이 게재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인을 ‘김여사’ 등으로 조롱한 댓글이 달리는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 받고 있다며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방송제작 과정의 실수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의사가 있음을 확인, 손해배상금 1,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에게 권유했고,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SBS-TV - SBS모닝와이드 프로그램 『블랙박스로 보는 세상』 제하의 보도 (2015년 5월 27일자)

### ■ 내 용

- ▶ 진행자 : 한 식당 앞에서 만난 제보자, 주차장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데요.
- ▶ 제보자 : 황당한 사고가 생겨서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 ▶ 진행자 :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주차장에 차를 댄 손님이 식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차가 서서히 후진을 하죠. 분명히 차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 불안한데요.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멈출 줄 모르는데요. 아... 저 밑에는 더 이상 안되는데요. 아... 결국은 떨어지고 맙니다. 차가 떨어진 곳은 도랑이였는데요. 어이구... 한눈에 봐도 도랑이 깊어 보이네요. (후략)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2015년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신청인에게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이 위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06. 19.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000,000원 지급

## 사례 21

박원순 시장의 가든파이프 방문 당시 항의하던 신청인의 초상 및 음성을 동의 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3065 손배청구
신 청 인	신○○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채널에이 (채널A)
중 재 부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2015. 06. 15.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손해배상)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서울시장의 시정 활동에 대해 보도하면서 시장에게 항의하는 신청인의 초상 및 음성을 공개된 장소에서 공적 주제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목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후 모자이크 및 음성변조 처리 없이 방송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로 인해 악성댓글이 달리고 다른 인터넷 게시판으로 전파 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해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손해배상 3,000,000원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의 초상이 공개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상권 침해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인터넷을 통해 전파된 보도물로 인하여 확대된 신청인의 고통을 감안해 조정대상보도를 삭제하고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9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권유하자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채널A - 채널 A 종합뉴스 프로그램 『박원순, 가든파이프 방문... 상인들 “쇼하냐” 항의』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12일자) 외 2건

## ■ 내 용

- ▶ 앵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대형 쇼핑몰을 방문했습니다. 박 시장의 심야 브리핑으로 동선이 공개된 35번째 메르스 환자인 의사가 식사를 했던 건물이죠. 박 시장은 당초 이 의사 환자가 방문했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려다 긴급히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 기자 : 35번째 메르스 환자인 30대 남성 의사가 식사를 하기 위해 방문했던 가든파이브. 지난 4일 밤 박원순 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한 뒤 손님이 크게 줄어든 자 박 시장이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상인들은 박 시장의 브리핑으로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하소연했습니다.
  
- ▶ 박원순 서울시장 : “요 며칠 사이에 좀.” (많이 없어졌어요)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박 시장에게 힘내라며 격려하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거세게 항의는 상인도 있었습니다.
  
- ▶ 가든파이브 상인 : “시장님이 경솔한 행동을 하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다고 고객들이 여기 다시 오겠어요. 일종의 쇼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방문 도중 박 시장의 일정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애초 공개한 박 시장의 일정에는 35번 환자가 다녀간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의 상태가 안좋은 상황에서 방문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급히 계획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결국 소란 끝에 박 시장은 해당 식당에 3분 정도 들러 업주와 간단한 인사만 나눴습니다.
  
- ▶ 박원순 서울시장 : “여러 가지로 힘드셨겠어요. 아무튼 뭐 장사 잘 하시구요. 잘 극복을 해야죠. 그렇죠.” “아휴 얘기가 다 끝난건가요.”
  
- ▶ 기자 : 박 시장은 이번 주말과 다음주 초가 최대 고비라며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입니다.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5년 7월 3일(금)까지 9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다른 인터넷 게시공간(유튜브 및 풀빵닷컴 등)에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동영상이 게재된 경우, 신청인은 2015년 7월 3일(금)까지 피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피신청인은 해당 게시공간 관리자에게 위 동영상이 게시되지 않도록 삭제를 요청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할 경우,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06. 29.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900,000원 지급

## 사례 22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3587~3590 각 손해청구
신 청 인	박○○
피 신 청 인	1. 주식회사 매일방송 (MBN, 인터넷 MBN) 2. 네이버 주식회사 (네이버) 3. 주식회사 다음카카오 (다음)
중 재 부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2015. 09. 21.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손해배상 등)

### 사건개요

- 피신청인 방송사는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이 하고하고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보도하였고, 포털들은 해당 기사를 제공받아 업로드함과 동시에 검색화면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정지화면으로 게시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건과 무관한 자신을 무단으로 촬영 후 보도하였거나 포털의 검색결과에 본인의 사진 및 동영상은 노출시켜 자신이 해당 사건의 가족으로 오인받는 등 심적인 고통이 크다며 손해배상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언론사가 비록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으나 조정대상보도에 나온 아파트 외 관과 신청인의 가방·옷차림을 본 아파트 주민이라면 신청인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손해배상금 700,000원 및 포털의 검색기사에서 신청인의 초상이 노출되지 않게 조치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1

- MBN - 뉴스8 프로그램 『“남편만 따르는 것 미워써” 5살 아들 살해한 친엄마』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14일자, 인터넷 MBN 9월 14일자 사회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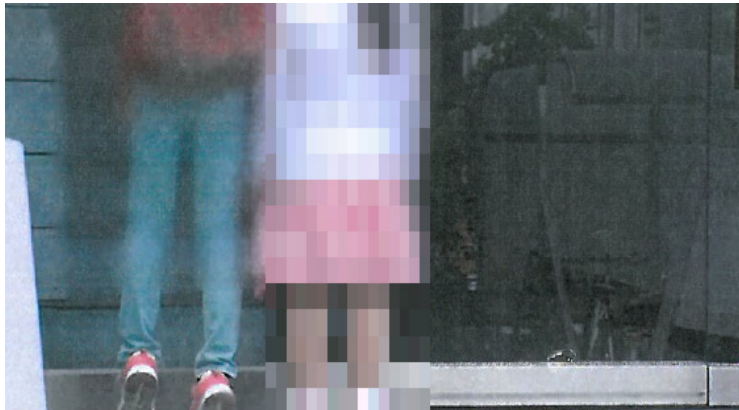
### ■ 내 용

▷앵커 : 5살 된 자신의 친아들을 욕조물 속에 넣어 살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들이 가족을 잘 돌보지 않는 아빠만 따르는 게 미웠다는데, 이 엄마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지난 10일 오후 이곳에 사는 38살 황모 씨는 5살 된 아들을 데리러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집에 돌아온 황 씨는 갑자기 청테이프로 아들의 손을 묶고 입을 막은 채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욕조에 미리 물을 채워 놓았던 황 씨는 아들을 욕조에 앉힌 채 머리를 물속으로 밀어 넣어 살해했습니다.



▷(인터뷰) 이웃 주민 : “겨울에 슬리퍼 신고 다니고, 인사해도 잘 받지도 않고, 저희 남편한테 아저씨 담배 있냐고 항상 물어보고...”

▷기자 : 황 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숨진 아들의 옷을 갈아입힌 뒤 방바닥에 눕혀 자고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두 시간 뒤, 집에 돌아온 딸은 동생의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이 사실을 전화로 아빠에게 알렸고 집에 돌아온 황 씨의 남편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인터뷰) 경기 남양주경찰서 ○○과장 : “평상시에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대화가 단절되고, 아들이 아빠를 좋아하고 자기를 덜 좋아하는 것을 계기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기자 :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잠을 자다 숨졌다고 말했지만 수사가 계속되자 욕조에서 혼자 놀다가 물에 빠져 숨졌다고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추궁에 황 씨는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 기자 : 경찰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뉴스 김○○입니다.

## 조정대상보도 2

- 네이버 - 『“남편만 따르는 것 미워서” 5살 아들 살해한 친엄마』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4일자 사회면)
- 내 용

NAVER 뉴스
인쇄하기

---

**"남편만 따르는 것 미워서" 5살 아들 살해한 친엄마**

MBN | 기사입력 2015-09-14 20:22



**NAVER** "남편만 따르는 것 미워서" 5살 아들 살해한 친엄마 검색

통합검색   블로그   카페   지식iN   이미지   동영상   어학사전   뉴스   더보기

정렬   보기방식   유형   기간   채널시간   출처   옵션유지   편집   검색결과

"5살 아들 살해한 친엄마"에 대한 검색결과 중 "남편만 따르는 것 미워서"가 정확하게 일치한 상세검색 결과입니다. 일반검색 결과보기

**동영상** 1-1 / 1건



**남편만 따르는 것 미워서 5살 아들 살해한 친엄마**

【앵커멘트】 5살 된 자신의 친아들을 욕조물 속에 넣어 살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들이 가족을 잘 돌보지 않는 아빠만...**

2월 2일   네이버 뉴스

## 조정대상보도 3

- 다음 - 『“남편만 따르는 것 미워서” 5살 아들 살해한 친엄마』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4일자 사회면)

### ■ 내 용

#### "남편만 따르는 것 미워서" 5살 아들 살해한 친엄마

MBN | 입력 2015.09.14. 19:52 | 수정 2015.09.14. 20:42

댓글 0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 【앵커멘트】

5살 된 자신의 친아들을 욕조물 속에 넣어 살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들이 가족을 잘 돌보지 않는 아빠만 따르게 미웠다는데, 이 엄마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지난 10일 오후 이곳에 사는 38살 황 모 씨는 5

살 된 아들을 데리러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집에 돌아온 황 씨는 갑자기 정테이프로 아들의 손을 묶고 입을 막은 채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남편만 따르는 것 미워서" 5살 아들 살해한



상세검색

통합검색

이미지

동영상

뉴스

블로그

카페

트위터

웹문서

동영상 **전체** 최신



**남편만 따르는 것 미워서" 5살 아들 살해한 친엄마** 2015.09.15

출처: MBC뉴스 | 사이트 내 검색

**남편만 따르는 것 미워서" 5살 아들 살해한 친엄마** 2015.09.14

출처: MBC뉴스 | 사이트 내 검색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각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 (주)매일방송은 이 사건 각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한 후 보도한 점에 대해 신청인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 (주)매일방송은 신청인에게 2015년 10월 16일(금)까지 7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 (주)매일방송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신청인 (주)매일방송은 MBN 홈페이지(www.mbn.co.kr)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중 신청인이 노출된 장면을 DB에서 영구히 삭제하여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하며 향후 재활용되지 않도록 한다.  
피신청인 (주)매일방송은 2015년 10월 16일(금)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의 이 사건 초상이 노출된 게시물의 URL을 전달받아, 피신청인 (주)매일방송과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서 해당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도록 각 포털사에 요청한다.
4. 피신청인 네이버(주) 및 (주)카카오는 이 사건 각 조정대상기사 중 신청인의 초상이 노출된 장면이 네이버 및 다음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향후 피신청인 네이버(주) 및 (주)카카오는 신청인의 이 사건 초상이 노출된 게시물의 URL에 대해 신청인의 신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조치 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각 조정대상기사에 대해 피신청인들과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10. 02.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MBN  
손해배상금 700,000원 지급

